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 상시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시행하는 항공안전 상시평가에 대비하여 평가 대응 절차 및 기준, 범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상시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항공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영문 약어의 의미는 별표1에 따른다.

1. “항공안전 상시평가(USOAP-CMA, 이하 “상시평가라 한다”)”란 ICAO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체약국을 대상으로 ICAO 국제기준에 따른 항공안전감독체제 운영여부와 안전성과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방식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종합대책”이란 상시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범 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말한다.
3. “ICAO 국제기준”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규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 항행절차(PANS) 및 지역보충절차(SUPPs) 등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약국이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말한다.
4. “상시평가 온라인 시스템(CMA Online framework)”이란 ICAO가

상시평가에 필요한 각종 안전정보의 수집 및 분석, 체약국과의 정보 공유 등을 위하여 구축한 통합 웹 시스템을 말한다.

5. “평가 유관기관”이란 ICAO 국제기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 이행, 상시평가 대응 및 수검 업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부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항공기상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말한다.
6. “담당 부서(기관)장”이란 상시평가 대응 및 수검 실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평가 유관기관 소속의 각 부서(기관)의 장을 말한다.
7. “체약국 공한(State Letter)”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국제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사전 의견조회, 국제기준 제·개정 사항의 채택·승인 알림 또는 기타 회원국의 의견수렴 및 정보 전달 등을 위하여 ICAO에서 회원국에 보내오는 서한을 말한다.
8. “국제표준관리시스템(SARPs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System)”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규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과 우리나라의 법령 등을 비교·검토하여 이행 여부를 결정하고, 공한접수 및 처리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말한다.
9. “국내법령 등”이란 국제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국내법령, 고시, 훈령 등을 포함하는 제반 국내 규정 및 지침을 말한다.
10. “차이점(Differences)”이란 국제기준과 국내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요건이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하며,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한다.

가.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경우(More exacting or exceeds)

나. 국제기준과 기본적인 성격이 다른 경우(Different in character or Other means of compliance)

다. 국제기준보다 약화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Less protective, partially or not implemented)

11. “ICAO 전자차이점통보(Electronic Filing of Differences) 시스템”

이란 체약국이 국제기준의 이행·불이행 및 차이점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ICAO에서 개발한 웹 시스템을 말한다.

12. “사전질의서(SAAQ)”란 ICAO가 상시평가와 관련하여 체약국의

국가항공안전체제 및 항공산업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한 질의서를 말한다.

13. “세부평가항목(PQ)”이란 ICAO가 상시평가와 관련하여 체약국의

안전감독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있는지 그 이행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한 평가항목을 말한다.

14. “국제기준 이행실적 점검표(CC)”란 ICAO가 상시평가와 관련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의 18개 부속서 각 조항별 체약국의 이행실태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한 평가양식을 말한다.

15. “정보요구서(MIR)”란 ICAO가 상시평가와 관련하여 체약국의 항

공안전감독체제 또는 국제기준 이행 상태 등에 의문점이 있을 경우 체약국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해 발

행하는 서류를 말한다.

16. “개선권고사항(F&R)”이란 ICAO가 상시평가와 관련하여 국제기준 이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체약국에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을 말한다.

17. “개선조치계획(CAP)”이란 ICAO가 발행한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체약국에서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정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서를 말한다.

18. “현장평가”란 상시평가의 일부로서 ICAO 평가단이 체약국의 항공당국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확인 및 인터뷰 등을 통해 국제기준 이행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현장평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종합평가(CSA Audits) : 법령, 조직, 자격, 운항, 감항, 사고조사, 항행, 비행장 등 8개 평가분야 전부 또는 특정분야를 평가

나. 확인평가(ICVMs) : 종합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권고사항의 이행실태를 확인(Off-site Validation을 포함)

다. 안전평가(Safety Audits) : 체약국의 자발적 요청에 의한 평가

**제3조(양해각서의 체결)** 국토교통부장관은 ICAO와 대한민국간 항공안전 상시평가 시행에 관한 기준, 방식, 절차 및 양자간 의무와 권한 등을 정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제4조(상시평가의 총괄)** ① 항공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상시평가 대응 업무에 관한 모든 과정과 진행 상황, 평가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

항 등을 총괄한다.

② 항공정책실장은 상시평가 총괄에 관한 실질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항공정책실 소속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장(이하 “ICAO 전략기획팀장”이라 한다)을 실무관리자로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무관리자로 지정된 ICAO 전략기획팀장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대책의 수립 및 동 대책 상의 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2. 상시평가 대응 활동의 총괄 및 지원
3. 상시평가 관련 ICAO와의 협의
4. 상시평가 관련 ICAO 활동상황 모니터링 및 관련 정보의 전파
5. 상시평가 온라인 시스템(CMA Online framework, 이하 “OLF”라 한다) 접근권한 관리
6. 그 밖에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④ ICAO 전략기획팀장은 상시평가 관련 ICAO와의 효율적인 업무 협의 및 평가 자료 입력관리 등을 위하여 1인의 국가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국가코디네이터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국제기준과 국내 항공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 한다.

**제5조(기본지침)** 항공안전 상시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평가대응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범 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담당 부서(기관)장은 평가와 관련된 소관 분야의 국제기준 이행과 ICAO에서 요구하는 평가자료에 대한 답변자료 및 입증자료 등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3. 담당 부서(기관)장은 항공안전 상시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ICAO 전략기획팀장을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
4. 담당 부서(기관)장은 국제기준 이행에 필요한 법령, 규정, 인력 및 장비의 확보, 전문 연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각 담당자는 국제기준에 따른 제반 안전활동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항공정책실에 설치된 항공안전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6. 각종 평가자료를 ICAO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가코디네이터의 통제 하에 OLF를 통해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상시평가와 관련하여 동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3조에 따른 양해각서 및 ICAO Doc 9735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 **제2장 합동대책반**

### **제1절 운영위원회**

**제6조(설치 및 구성)** ① 항공정책실장은 상시평가에 관한 효율적인 대응과 평가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조정 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

기 위하여 항공정책실 아래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정책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소속 정책관,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  
항공청장 및 제주항공청장
2. 국방부, 공군본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항공기상청의 항공 관련부문  
담당 국·과장급 직위의 자
3.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의 본  
부장급에 해당하는 자
4. 항공사 및 항공관련 협회, 연구기관 등 민간기관의 임원급 또는 이  
에 준하는 박사 학위 소지자
5.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ICAO 전략기획팀장으로 한다.

**제7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시평가 대응방향의 결정
2. 평가 대응활동 진행상황에 대한 확인
3. 평가 유관기관 간 협의·조정  
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운영)**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1인 이상의 위원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항공안전정책관이 대행한다.

## 제2절 실무작업팀

**제9조(설치 및 구성)** ① 항공안전정책관은 상시평가 대응에 필요한 실무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밑에 실무작업팀을 설치하며, 실무작업팀이 수행하는 업무 추진상황을 총괄한다.

② 실무작업팀은 평가분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총 7개팀으로 구성하며 각 팀에는 팀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팀원을 둔다.

1. 법령·자격팀

2. 조직팀

3. 운항팀

4. 감항팀

5. 항행팀

6. 비행장팀

7. 사고조사팀

③ 각 팀장은 항공정책실 소속 담당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담당 사무



관으로 하며, 팀원의 인원과 구성은 평가 유관기관 소속 실무담당자 중에서 해당 팀장이 정한다.

**제10조(임무)** 실무작업팀은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종합대책 상의 이행계획의 추진
2. 제16조에 따라 작성된 평가자료의 검증
3. 국제기준 이행상의 장애요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4. 그 밖에 각 팀별 현안사항 논의·해결 등

**제11조(운영)** ① 항공안전정책관은 실무작업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개팀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해당 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팀장이 소관 팀별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담당 부서(기관)장은 실무작업팀에서 평가자료를 검증한 결과 미흡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 **제3장 국제기준 이행 관리**

**제12조(체약국 공한의 처리)** ① 각 부서(기관)장은 ICAO로부터 접수된 체약국 공한에 대한 처리 담당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국제표준관리시스템(SARPs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System, 이하 “SMIS”라 한다)에 입력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ICAO가 체약국 공한에 대한 검토의견 또는 조치결과 등의 회신을 요청한 경우, 각 부서(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에 회신계획을 포함시켜야 하며, ICAO가 언급한 조치시한 이내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전파, 영향성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담당 부서(기관)장은 제1항의 체약국 공한 처리를 완료한 경우 조치 결과 및 종결 여부를 SM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3조(국제기준 이행)** ① 담당 부서(기관)장은 ICAO에서 제·개정된 국제기준을 국내 법령 등에 반영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담당 부서(기관)장은 소속 직원 중 부속서 조항별 책임관리자를 지정하고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국제기준 각 조항의 이행실적, 관련 국내 규정의 개정 내역 등을 SMIS에 입력 및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리자는 담당 부서(기관)별로 1인의 승인자(과장급), 1인의 확인자(계장급), 1인의 검토자(실무급) 등 최소 3명으로 구성하며, 책임관리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ICAO 전략기획팀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담당 부서(기관)장은 ICAO에서 국제기준 제·개정 사항을 채택·승인하여 체약국 공한 등을 통해 이를 체약국에 알려온 경우 채택·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SM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4조(차이점 통보 등)** ① 담당 부서(기관)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국내사정 또는 정책적 판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국제기준과 국내법령 등에 차이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ICAO 전략기획팀장에 ICAO전자차이점통보 시스템(Electronic Filing Of Differences)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ICAO에 통보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국제기준의 제·개정 사항에 대한 미이행 의사 통보일 경우

2. 국내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관련 국제기준과 국내법령 등에 차이점이 발생한 경우

② 담당 부서(기관)장은 ICAO에 통보한 차이점 내용 중 중요한 사항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47조에 따라 항공정보간행물(AIP) 등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담당 부서(기관)장은 모든 차이점 통보 사항에 대하여 ICAO 전략기획팀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장 상시 모니터링 단계

**제15조(평가자료 등)** ① 상시평가와 관련하여 ICAO에 수시로 제출·관리하여야 하는 자료(이하 “평가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자료별 관리 책임은 별표3에 따른다.

1. 사전질의서(SAAQ)
2. 세부 평가항목(PQ)

3. 국제기준 이행실적(CC) 및 국제기준과의 차이점(Differences)

4. 정보요구서(MIR)

5. 개선조치계획(CAP) 및 이행실적(CAP Progress)

6. 그 밖에 ICAO가 요구하는 안전정보

② ICAO 전략기획팀장은 ICAO로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소관 사항을 분류하여 담당 부서(기관)장에게 자료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담당 부서(기관)장은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ICAO에 제출하려는 경우 평가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ICAO 전략기획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자료의 작성 및 관리)** ① 담당 부서(기관)장은 ICAO에서 요구하는 평가자료에 대하여 ICAO 전략기획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관 분야별 답변자료와 입증자료(이하 답변자료 등)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담당 부서(기관)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답변자료 등을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담당 부서(기관)장은 답변자료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히 ICAO 전략기획팀장에게 통보하고, ICAO 전략기획팀장과 협의하여 답변자료 등을 수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자체 진단)** ① 담당 부서(기관)장은 제15조에 따른 평가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필요 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이 경우 진단 주기는 최소 6개월에 1회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CAO 전략기획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시평가에 포함되는 전 분야 또는 특정 분야의 관리 실태의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진단을 할 수 있다.

③ ICAO 전략기획팀장은 담당 부서(기관)장이 작성한 평가자료를 ICAO에 제출하기 전에 별도의 검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 부서(기관)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담당 부서(기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진단·검증과정에서 미흡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18조(기술자문 등)** ① 담당 부서(기관)장은 효율적인 국제기준 이행 방안 마련 또는 평가자료에 대한 객관적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ICAO 전략기획팀장에게 국내·외 전문가 등을 활용한 기술자문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ICAO 전략기획팀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상시평가 온라인 시스템 관리)** ① ICAO 전략기획팀장(국가코디네이터)는 OLF 시스템 상에서 우리나라와 관련한 각종 평가자료의 입력상태 및 ICAO의 활동상황 등을 모니터링 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ICAO 전략기획팀장(국가코디네이터)는 담당 부서(기관)장이 OLF에 접속하여 평가자료를 입력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접근권한 등을 부

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장 현장평가 단계**

**제20조(수검준비 등)** ① ICAO 전략기획팀장은 ICAO가 우리나라를 현장평가 대상국가로 선정·통보한 경우 관련 사실을 신속히 항공정책실장에게 보고하고 평가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 ICAO 전략기획팀장은 현장평가 계획 단계부터 ICAO와 긴밀히 협의하고 수집된 정보를 수검대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합동 수검대책반 설치 및 구성 등)** ① 항공정책실장은 제20조에 따른 현장평가가 확정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수검대책반을 설치하고 가동하여야 한다.

② 수검대책반에는 1인의 수검대책반장과 1인의 수검코디네이터를 둔다. 이 경우 수검대책반장은 항공정책실장이 되며, 수검코디네이터는 국가코디네이터가 된다. 수검대책반장은 수검코디네이터 아래에 총괄팀, 상황팀, 수검팀, 의전지원팀 등 4개의 실무팀을 두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검코디네이터는 수검 준비부터 사후 단계까지 현장평가 전 과정을 조정·관리한다. 다만 실무팀 중 수검팀은 별도의 구성없이 제9조에 따른 실무작업팀을 전환·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팀장 등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책반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표4에서 정한다.

④ 수검대책반의 운영 기간은 항공정책실장이 설치 및 가동을 소집한 때부터 현장평가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⑤ 수검대책반은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총괄팀

가. ICAO 평가단과 평가일정 등 사전 협의

나. 평가 예행연습 준비 및 실시 주관

다. 국가 브리핑 준비 및 실시

라. 수검전반 총괄 및 수검기간 중 발생하는 주요 결정사항의 검토 및 조정 등

#### 2. 상황팀

가. 분야별 수검현황 파악 및 수검일지 작성

나. 수검 진행사항 보고(일일/정기/수시/종합)

다. 수검 관련 언론 대응·통제 및 필요조치 등

#### 3. 수검팀

가. 평가분야별 수검 준비 및 실제 수검대응

나. 분야별 브리핑 준비 및 실시, 현장방문 준비 및 대응 등

#### 4. 의전지원팀

가. ICAO 평가단 공항영접, 이동관리, 환송 등 의전관리

나. 개막/폐막회의 등 관련행사 시 회의장·부대시설 지원 등

**제22조(ICAO 평가단 협조)** ICAO 전략기획팀장(국가코디네이터)는 ICAO 평가단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서류·자료 등의 제공, 관계자·

기관 방문, 항공교통관제시설·비행장 및 그 밖의 제한구역에 대한 접근권한, 통역, 수검 장소 및 기타 사무장비의 제공 등 원활한 현장평가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와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현장평가 후속 조치)** ① ICAO 전략기획팀장은 현장평가 종료 후 ICAO로부터 최종 평가결과 보고서가 발표될 경우 이를 항공정책 실장에게 보고하고 평가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 ICAO 전략기획팀장은 최종 평가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ICAO에서 요구한 조치시한 등을 감안하여 소관 부서(기관)장으로 하여금 개선대책, 담당 부서(기관), 완료예정일 등을 포함한 개선 조치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기관)장은 개선조치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ICAO 전략기획팀장(국가코디네이터)를 통해 ICAO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수립된 개선조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를 ICAO 전략기획팀장(국가코디네이터)를 통해 ICAO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선조치계획 등의 ICAO 제출방식에 관한 사항은 제3장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장 기타 사항



**제24조(조사·연구 또는 자문의 의뢰)** ① 항공정책실장은 성공적인 상시평가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외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 또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수당 등)** 항공안전 상시평가 합동대책반 소속 위원 및 팀원 등 (이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